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지침 주요 개정(안)」 신 · 구 대조표

2025학년도(현행)	2026학년도[개정(안)]	개정 사유
I. 배정업무 지침	I. 배정업무 지침	
2 근거	2 근거	-근거 조항 추가 정비
○ (신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규정」 ○ 「경기도 부천시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배정 계획」 ○ (신설) ○ (신설)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54호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2024. 9. 2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 (삭제) ○ (삭제) ○ (삭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경기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944호) ○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25-000호)	
3. 배정대상	3. 배정대상	
마.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그 지역 중학교 배정을 포기하고, 차년도 2월 말까지 전 가족이 부천시에 거주(예정)하는 자	마. (이동)	-목차 구성 정비 (9-가)로 이동
○ (생략) ○ (신설)	○ (현행과 같음) ○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 (이하 ‘특성화중’ 으로 표기)에 지원하여 입학이 결정된 자는 배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 대상학교: 옥길새길중학교, 내손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 로 지정된 학교	-특성화중 입학자 내용 추가

2025학년도(현행)	2026학년도[개정(안)]	개정 사유
4. 배정원칙 <u>다. 재배정 시 해당 중학군에 속한 중학교 중 원서접수 이전일 기준으로 결원이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정원보다 지망 인원이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u> <u>※ 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학생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배정 학급 증설 가능</u> 라. (생략) 마. (생략) ※ (생략) ※ 입학 후 확인한 경우, 학기 중이더라도 실거주지 학군 내 배치 여력이 있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한다. 바. (생략) 사. 거주지 이전 예정자 1) 배정원서 접수 기간 마감 전까지 <u>거주지 이전이 확정된 경우</u>, 학교장의 증빙서류 확인 후 거주지 이전 예정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 (생략) 자. 배정포기자 1) <u>배정포기서 제출기한은 부천시 관내 중학교 배정통지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미포함)로 한다.</u>	4. 배정원칙 다. (이동)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바. (현행과 같음) 사. 거주지 이전 예정자(신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포함) 1) 배정원서 접수 기간 마감 전까지 거주지 이전(또는 차년도 2월 말까지 거주지 이전 완료 예정)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교장의 증빙서류 확인 후 거주지 이전 (예정)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원서를 작성한다. 아. (현행과 같음) 자. 배정포기자 1) 배정포기서는 재배정 원서접수 시작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목차 구성 정비 (9-나)로 이동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문구 명확화 -문구 명확화
5. 일반배정 대상자 라.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배정원서를 작성하고, 해당 학교에서 부천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제출 및 접수한다. 마.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는 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배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u>부천교육지원청으로 개별 제출 및 접수한다.</u>	5. 일반배정 대상자 라.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배정원서를 출신 초등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부천교육지원청에 일괄 제출한다. 마.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지원자는 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배정원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부천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한다.	-문구 명확화

2025학년도(현행)	2026학년도[개정(안)]	개정 사유
바. <u>시흥 계수초등학교(시흥시 계수동 거주) 졸업(예정)자로서 부천시 소사·옥길중학군 내 중학교로 배정 희망하는 자는 학교에서 원서접수하고, 학교는 접수기간 내 부천교육지원청으로 원서 인편 제출 및 접수한다.</u>	바. 시흥시 계수동에 거주하면서 시흥 계수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인 학생이 부천시 소사·옥길중학군 내 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배정원서를 계수초등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부천교육지원청에 일괄 제출한다.	
6. 우선배정 대상자 바. <u>보호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u> 2)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u>경기남부보호지청</u>에 확인하는 「보호자 자녀 확인」은 생략하며, <u>경기남부보호지청</u>에서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한다. 아. <u>지체장애인</u> 1) 대상 나) (신설) 2) 적격 여부가 확인된 <u>지체장애인은</u> 집에서 가장 근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우선배정 할 수 있다. 배정 희망교는 1근거리 학교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u>종합병원 또는 국·공립 병원 의사 진단서 등 지체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1부.</u>	6. 우선배정 대상자 바. 보호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2)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인천보호지청에 확인하는 「보호자 자녀 확인」은 생략하며, 인천보호지청에서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한다. 아. 지체장애인 및 회귀·난치질환자 1) 대상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회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회귀질환 (2) 암, 제1형 당뇨병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2)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지체장애인 혹은 회귀·난치질환자는 집에서 가장 근 거리에 있는 중학교에 우선배정 할 수 있다. 단, 배정 희망교는 1근거리 학교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3차의료기관 또는 국·공립 종합병원의 의사 진단서 등 지체장애 혹은 회귀·난치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1부.	- 부천 관할 지청 변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한 개정 사항 반영

2025학년도(현행)	2026학년도[개정(안)]	개정 사유																																								
7. 특별 선배정 다. 교육장 직권 조정 배정 1) <u>학교장의 요청으로 특별 선배정 대상이지만 사안의 특성상 공개될 경우 학생·보호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2) <u>학교장의 요청으로 특별 선배정 대상이지만 사정상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u>	7. 특별 선배정 다. 교육장 직권 조정 배정 -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지만, 사안의 특성상 공개 시 학생·보호자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거나, 사정상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구 명확화																																								
8. 배정절차 가. 세부배정절차 ※ <u>한번 배정받은 중학교는 변경 불가하며, 같은 중학교 내에서의 전학도 불가함</u> 나. ‘거리 측정’ 방법 2) 아파트 동 출입구 또는 단독 주택 대문에서 중학교 교문(정문, 후문 등) 까지 도보 통행로의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제1근거리, 제2근거리, … <u>5근거리</u> 까지 부여하며 <u>6근거리</u> 부터는 동일근거리로 간주한다. (<u>5근거리</u> 학교까지만 거리 측정) 다. 근거리 순위 부여 예시 <table><tr><th>학생 이름</th><th>A중학교 (1지망)</th><th>B중학교 (2지망)</th><th>C중학교 (3지망)</th><th>D중학교 (4지망)</th></tr><tr><td>[가]학생</td><td>250m(1군)</td><td>900m(2군)</td><td>1,500m(3군)</td><td><u>2,300m(4군)</u></td></tr><tr><td>[나]학생</td><td>1,300m(2군)</td><td>1,000m(1군)</td><td>2,000m(4군)</td><td><u>1,500m(3군)</u></td></tr><tr><td>[대]학생</td><td>1,500m(1, 2군)</td><td>1,580m(1, 2군)</td><td>1,800m(3군)</td><td><u>2,100m(4군)</u></td></tr></table> 1) [가]학생의 경우 거주지에서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u>D중학교</u> 순으로 근거리인 경우로 1지망을 A중학교에 지명한 경우 정원 초과 시 근거리 경합에서 유리함 라. ‘전·입학 일자 순위’ 부여 1) (생략)	학생 이름	A중학교 (1지망)	B중학교 (2지망)	C중학교 (3지망)	D중학교 (4지망)	[가]학생	250m(1군)	900m(2군)	1,500m(3군)	<u>2,300m(4군)</u>	[나]학생	1,300m(2군)	1,000m(1군)	2,000m(4군)	<u>1,500m(3군)</u>	[대]학생	1,500m(1, 2군)	1,580m(1, 2군)	1,800m(3군)	<u>2,100m(4군)</u>	8. 배정절차 가. 세부배정절차 ※ 한번 배정받은 중학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전학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처리 지침 」에 따름 나. ‘거리 측정’ 방법 2) 아파트 동 출입구 또는 단독 주택 대문에서 중학교 교문(정문, 후문 등)까지 도보 통행로의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제1근거리, 제2근거리, 제3근거리 까지 부여하며 제4근거리 부터는 동일근거리로 간주한다. (제3근거리 학교까지만 거리 측정) 다. 근거리 순위 부여 예시 <table><tr><th>학생 이름</th><th>A중학교 (1지망)</th><th>B중학교 (2지망)</th><th>C중학교 (3지망)</th><th>(삭제)</th></tr><tr><td>[가]학생</td><td>250m(1군)</td><td>900m(2군)</td><td>1,500m(3군)</td><td>(삭제)</td></tr><tr><td>[나]학생</td><td>1,300m(2군)</td><td>1,000m(1군)</td><td>2,000m(4군)</td><td>(삭제)</td></tr><tr><td>[대]학생</td><td>1,500m(1, 2군)</td><td>1,580m(1, 2군)</td><td>1,800m(3군)</td><td>(삭제)</td></tr></table> 1) [가]학생의 경우 거주지에서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삭제) 순으로 근거리인 경우로 1지망을 A중학교에 지명한 경우 정원 초과 시 근거리 경합에서 유리함 라. ‘전·입학 일자 순위’ 부여 1) (현행과 같음)	학생 이름	A중학교 (1지망)	B중학교 (2지망)	C중학교 (3지망)	(삭제)	[가]학생	250m(1군)	900m(2군)	1,500m(3군)	(삭제)	[나]학생	1,300m(2군)	1,000m(1군)	2,000m(4군)	(삭제)	[대]학생	1,500m(1, 2군)	1,580m(1, 2군)	1,800m(3군)	(삭제)	-관련 지침 반영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학생 이름	A중학교 (1지망)	B중학교 (2지망)	C중학교 (3지망)	D중학교 (4지망)																																						
[가]학생	250m(1군)	900m(2군)	1,500m(3군)	<u>2,300m(4군)</u>																																						
[나]학생	1,300m(2군)	1,000m(1군)	2,000m(4군)	<u>1,500m(3군)</u>																																						
[대]학생	1,500m(1, 2군)	1,580m(1, 2군)	1,800m(3군)	<u>2,100m(4군)</u>																																						
학생 이름	A중학교 (1지망)	B중학교 (2지망)	C중학교 (3지망)	(삭제)																																						
[가]학생	250m(1군)	900m(2군)	1,500m(3군)	(삭제)																																						
[나]학생	1,300m(2군)	1,000m(1군)	2,000m(4군)	(삭제)																																						
[대]학생	1,500m(1, 2군)	1,580m(1, 2군)	1,800m(3군)	(삭제)																																						

2025학년도(현행)	2026학년도[개정(안)]	개정 사유
* <u>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u> 교육부 훈령 제477호(2024. 3. 1. 시행) [별표7] 일부 발취 - (생략) 2) (생략) 3) <u>입학 일자는 입학 연도 3월 2일, 졸업 일자는 졸업 연도 2월 28일로 한다.</u> <u>입학 일자가 3월 2일이 아닌 경우, 실제 입학 일자로 한다.</u> 4) <u>같은 학군 내 전학인 경우, 이전 학교의 전·입학일자로</u> 순위를 적용한다.	* <u>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u> 교육부 훈령 제530호(2025. 7. 13. 시행) [별표7] 일부 발취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입학 일자는 학년도 시작일인 3월 1일, 졸업 일자는 졸업연도 2월 28일 (윤년은 29일)로 한다.</u> 4) <u>같은 학군 내 전학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군에 최초로 전·입학한 날을 기준으로</u> 순위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변경 반영 -4세대 나이스 전환에 따른 신입생 학적생성일 일원화 반영 및 문구 명확화
9. 재배정 대상자 가. 전입 1) 타 시·도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그 중학교 배정을 포기한 학생이거나, 일정상 본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귀국학생 등) 재배정 원서접수 기간 종료까지 전 가족이 부천에 거주지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차년도 2월말 까지 입주 예정인 학생 ※ 부천시 관내에서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재배정 대상자가 아니며, 차년도 3월 이후 전학 처리 2) <u>해당 중학군에 속한 중학교 중 원서접수 이전일 기준으로, 결원이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u> 지명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정원보다 지망 인원이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 (이동) 나. 전출 - 부천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을 받고(배정통지서 수령), 중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시·도 및 타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으로 그 지역 중학교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	9. 재배정 가. 대상자 - 타 시·도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그 중학교 배정을 포기한 학생이거나, 일정상 본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으로(귀국학생 등) 재배정 원서접수 기간 <u>마감 전까지 전 가족이 부천으로 거주지 이전을 완료했거나, 학년도 시작일 전일까지</u> 입주 예정인 학생 ※ 부천시 관내에서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재배정 대상자가 아니며, <u>학년도 시작일</u> 이후 전학 처리 나. 절차 - 해당 중학군에 속한 <u>결원(재배정 원서접수 전일 기준)이 있는 중학교 중 1. 지명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며, 정원보다 지망 인원이 많을 경우 2. 컴퓨터 추첨 순으로</u> 배정한다. ※ 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해 학생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배정 학급 증설 가능 나. 삭제	-목차 구성 정리 및 문구 명확화 -기존 (4-다) 내용을 (9-나)로 이동